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10. 2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희수 의원(찬성자 6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0년 9월 29일
- 회부일자 : 2010년 10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0.10.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산업 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제정·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안 제7)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11조 등)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 안정 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물류시책,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유통정책 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 물류시책,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요금의 조정, 물가안정 시책,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 유통 물류시책,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7. (생략)</p> <p>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p>	<p>제2조(기능)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그 밖에 ----- -----</p>

현행	개정안
<p>제7조(간사) ① (생략)</p> <p>② 간사는 <u>경제과장</u>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u>유통정책담당사무관</u>이 된다.</p> <p>③ (생략)</p>	<p>제7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업무담당 부서장</u>----- -----, <u>업무담당 사무관</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u>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수당과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수당 등) ----- ----- ----- 「<u>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 -- ----- ----- ----- -----.</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